

「2025년 조선해양기자재 직수출 활성화 지원사업」 수혜기업 모집 공고

한국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‘2025년도 직수출 활성화 지원사업’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1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, 자율적인 해외 진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
- 해외 바이어 발굴, 현지 마케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과 영업 기회 확대를 도움
- 해외 네트워크 부족, 정보 접근 어려움 등 중소·중견기업이 겪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, 산업 전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

□ 주 관 :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

□ 협약 기간 : 협약체결일 ~ 25년 11월 30일

□ 지원 대상

-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중소·중견 기업
- 제외대상(서류심사 시 평가대상에서 배제)

| 구 분 |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|
|---------------|--|
|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| -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- 신청내용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거나, 지나치게 넓은 경우 |
|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| -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-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|
|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| -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 - 국세·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(재창업 기업은 제외) -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 |

○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

| 구 분 | 확인 근거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결산이 완료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※ ‘한국기업데이터(주)’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,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|
|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■ 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(rndgate.ntis.go.kr) 조회 등 |

□ 지원 내용

| 구분 | 지원 프로그램명 | 지원 내역 | 모집 규모 | 지원 한도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| ○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지원 | 항공비 숙박비 통역비 | 11개사 내외 | 500만원 한도 (사업비의 최대 70% 이내) |
| | ○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 방문 지원 | | | |
| | ○ 해외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등 해외 로컬 타깃형 홍보 자료 제작 지원 | 홍보 자료 제작비 | | |

※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및 내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수혜기업 선정

※ 신청 프로그램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, 지원 금액 규모는 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선정 평가에 따라 신청 프로그램 개수 및 지원 금액이 조절될 수 있음.

※ 업체별 사업비 신청 현황에 따라 최대 지원율까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(최대 지원율 7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)

② 수혜기업 모집 개요

□ 모집기업 : 11개사 내외

□ 모집기간 : 25년 7월 1일(화) ~ 25년 7월 11일(금) 오전 11시까지

□ 접수 방법 : 이메일 접수 (제출처: hs@komea.kr)

□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
- 세부사업계획서
-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3년간(2022년~2024년) 재무제표
- 지방세 납세증명서-정부24 (소재지 확인)
- 수출입실적증명서-한국무역협회

3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

- 선정 방법 : 평가위원회를 통한 접수 서류 평가
- 선정 평가
 - 서류 평가 :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해 내부 세부평가 기준을 통해 평가 실시
 - 현장 평가(필요시) : 평가위원회가 현장 방문 평가 실시
 - 최종 선정 :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

※ 선정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| | 평가기준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정량적 평가 | 기업 수출규모 | ○ 매출대비 직·간접 수출실적 (직전년도 기준) * 수출입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발급) |
| | 사업화 수행능력 | ○ 해외인증 보유,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등 인프라 구축정도 |
| 정성적 평가 | 지원 필요성 | ○ 신청기업의 현지진출 등 사업화 의지 |
| | 현지 시장성 | ○ 시장확대 필요 품목 |
| | 추진 계획 및 향후 계획 | ○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지원사업 참여 후 도출 기대성과 (수출계약, 바이어 발굴 등) |

- 선정 결과 안내 : 개별 이메일 통보
- 기업별 사업 수행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청구서 제출
- 지원금 지급일 : 협약기간 종료일 (11월 30일) 이후 지급 예정
- 선정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사업 내용 변경 가능 (일정, 국가 및 업체 등)
주관기관과 협의 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
- 협약 기간 내 사업비 소진이 불가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불이익

④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

□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

| 용도 |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사업비 청구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비 청구서 ○ 입금계좌 통장 사본 ○ 세부 프로그램별 비용증빙 및 결과물 ○ 외화 지급시 지급일 기준 KEB 하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캡처 화면 |
| ② 결과보고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서식 1]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○ 국내 참석자 및 해외 바이어 명함 사본 ○ 바이어 미팅 사진 4장 이상 (단체, 미팅 등) |
| ③ 만족도 설문 조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만족도 설문 조사 |
| ④ 사후 성과 확인서 (필요시 요청 예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서, 수출면장 사본 등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○ 고용관련 증빙 (4대보험 가입 증명) |
| ⑤ 항공 이용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서식 2] 항공 탑승권 ○ 지원범위 : 신규 바이어 및 잠재적 바이어 발굴을 목적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/방문 국제선 항공 이용료 * 단, 목적지 외 국외 이동 항공료,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 * 환승 목적의 국내 교통비도 인정 (국내선 항공, 철도) ○ 필수 : 왕복 탑승권(실물종이 티켓/모바일 탑승권), 인보이스, E-Ticket/신용카드 전표 또는 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 |
| ⑥ 숙박 이용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범위 : 해외 바이어 초청/방문시 소요되는 숙박 이용료 ○ 필수 : 숙박 바우처, 인보이스/숙박 플랫폼(어플리케이션)내 이용완료 캡처화면 / 신용카드 전표 또는 외화 송금증 또는 영수증 |
| ⑦ 통역 이용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서식 3] 통역비 지급/이용 확인증 ○ 지원범위 :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통역 이용료 ○ 필수 : 통역사 이력서 사본, 세금계산서/신용카드 전표 또는 이체 확인증 |
| ⑧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홍보 자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범위 : 기업 및 제품 카탈로그 및 홍보 자료 제작비 ○ 필수 : 기업 및 제품 외국어 홍보책자 전자파일, 동영상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/신용카드 전표 또는 이체 확인증 |

5 사업 추진 절차



6 문의처 및 유의 사항

- 문의처 :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 해외협력실 이학성 사원
(Tel. 051-972-6475 / E-mail. hs@komea.kr)

- 1개사 당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
(사업비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비율 하향 조정 될 수 있음 : 총 사업비의 최대 70% 이내)

- 수혜기업(과제)이 아래항목 중 해당되는 경우,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및 지원 중단,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 - 유사 사업의 보조금 이중 수급의 경우
 -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한 경우
(날짜, 국가 등 변경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필수)
 -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
 - 주관기관의 장이 수혜기업의 사업수행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협약 기간 내 사업수행이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취소 (환수) 조치함

- 각 지원 사업별 계획서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 사업별 세부내용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요망

-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 양식은 추후 별도배포 예정

- 지원 종료 후 수혜기업에 대한 고용/매출/수출/비용절감 등 만족도 조사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.

- # 붙임 1. 지원 사업 신청서 1부.
2. 세부 사업계획서 1부.
3.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. 끝.